

제245회 정례회
2005. 12 12(월)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.

□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, 「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

-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·차고지·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
- 안 제3조는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
- 안 제4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정하였으며

- 안 제5조는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를 정하였으며
-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회전 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 및 공회전 단속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
- 안 제8조는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
- 안 제9조는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(2002. 12. 26)으로 광역시장·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 및 제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저감으로 사회적 비용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
- 안 제3조의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을 터미널·차고지·주차장등으로 정하였는데 자동차전용극장이나, 종합체육관 등 차량 주·정차 밀집지역의 제한지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- 안 제4조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종류, 사용 연료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

○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를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도민의 참여유도와 시민의식전환이 필수적인바 도 및 시군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방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, 「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